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정혜경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6402
----------	-------

발의연월일 : 2026. 1. 28.

발 의 자 : 정혜경·전종덕·손 솔
최혁진·윤종오·한창민
허성무·서미화·용혜인
김준형 의원(10인)

제안이유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사회 실현을 위해 재생에너지의 확대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에도, 현행법은 산업 활성화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적 관리·운영에 관한 규정이 미비함. 이로 인해 재생에너지 개발 과정에서 지역 불균형, 사적 독점, 개발이익 편중, 주민 수용성 부족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 원칙을 확립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지역 재생에너지 자립과 정의로운 전환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려는 것임. 또한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법률에 명시하고, 주민 참여와 협의 절차를 의무화함으로써 재생에너지 발전이 환경과 지역사회와의 조화를 이루며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 가. 법 목적에 ‘재생에너지 발전의 공영화’를 추가하고,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생산·이용 원칙으로 공영화, 자연환경 보전, 농림어업과의 조화, 주민 협의절차 마련을 명시하여 재생에너지 공영화 원칙을 신설함(안 제1조 및 제3조 신설).
- 나. 총 전력생산량 대비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을 2030년까지 30%, 2040년까지 60% 이상, 2050년까지 100% 달성하도록 단계적 목표를 설정하여 정부가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이행할 의무를 부과함(안 제4조 신설).
- 다. 기본계획에 ‘재생에너지 총 발전량 중 국·공영시설 발전 비율 목표’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조).
- 라. 광역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른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6조의2 신설).
- 마. 재생에너지 발전 공영주체 규정을 신설하여 국가·지자체가 설립하는 지방공단·출자출연기관 및 복수 기초지자체의 공동 법인을 공영주체로 규정함(안 제11조의2 신설).
- 바. 발전시설 설치·운영, 환경과의 조화, 재생에너지 자립 추진과 관련한 사항에 대해 주민·시민단체와 협의를 의무화함(안 제7조).
- 사. 자연력 활용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10% 범위 내의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지역 기후대응기금’으로 조성하여 지역 자립, 에너지

지복지, 정의로운 전환 사업 등에 활용함(안 제12조의2 신설).

아. 공영주체가 아닌 민간사업자의 경우 특허기간 만료, 조건 위반, 사정변경 시 사업을 공영주체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소명기회와 보상규정을 마련함(안 제12조의3 신설).

자. 국가 및 지자체에 석탄·원전 노동자의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전환 의무를 부과하고,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취업 교육, 생활보조금, 이주 비용 지원 등을 이행하도록 규정함(안 제12조의4 신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산업의”를 “발전의 공영화와 재생에너지 산업의”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과 이용의 원칙) ① 태양에너지·풍력·수력·해양에너지·지열에너지 등 국유인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공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경제적·기술적 사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특허에 의한다.

②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자연력의 재생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타인의 일상 생활 유지와 이를 위한 자연력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농업·림업 등 지역의 생산활동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하며, 주민이 이로 인한 편익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주민 의사 협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의 제목 “(시책과 장려 등)”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3항 및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만큼, 2050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중장기확대목표”라 한다)로 한다.

② 정부는 중장기확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연도별확대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 자립의 추진방법과 생산·이용·보급의 목표

3.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방안

4. 직전 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과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행한다.

제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의 국가기관 등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조건,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재생에너지 공영화

제11조의2 및 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2.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지방공단

3.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2항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부담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④ 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부담금관리기본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하여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특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영화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 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외형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노무제공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관계가 전환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전의 노무제공관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된다.

③ 노무제공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특허의 취소 또는 변경

제32조제1항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시·도지사”로 한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의 기술개발 및 이 용 · 보급 촉진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u>산업의</u> 활성화를 통하여 에너지원을 다양화하고,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 에너 지 구조의 환경친화적 전환 및 온실가스 배출의 감소를 추진 함으로써 환경의 보전, 국가경 제의 건전하고 지속적인 발전 및 국민복지의 증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 ----- -----발전의 공영화와 재 <u>생에너지 산업의</u> ----- ----- ----- ----- ----- ----- ----- ----- -----.
<신 설>	제3조(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 지 생산과 이용의 원칙) ① 태 양에너지 · 풍력 · 수력 · 해양에 너지 · 지열에너지 등 국유인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의 상업적 생산은 국가 및 지방자 치단체가 공영으로 함을 원칙 으로 하고, 경제적 · 기술적 사 유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 한 하여 특허에 의한다.

제4조(시책과 장려 등) <신 설>

②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은 자연력의 재생이 가능하고 자연환경에 중대한 피해를 야기하지 않으며 타인의 일상 생활 유지와 이를 위한 자연력 활용에 지장이 없는 한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생산이 농림어업 등 지역의 생산 활동과 조화롭게 공존하고, 지역 사회 공동체의 의견에 부합하며, 주민이 이로 인한 편익을 고루 누리도록 하고, 이를 위한 주민 의사 협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한다.

제4조(재생에너지 확대 목표 등)

① 정부는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2030년까지 총 에너지 발전량 대비 30퍼센트, 2040년까지 60퍼센트 이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만큼, 2050년까지 100퍼센트를 확보하는 것을 중장기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중장기 확대 목표”라 한다)로 한다.

<신 설>

① · ② (생 략)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생 략)

②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 3. (생 략)

<신 설>

4. ~ 10. (생 략)

③ (생 략)

<신 설>

② 정부는 중장기확대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 재생에너지 확대 목표(이하 “연도별 확대목표”라 한다)를 설정하여야 한다.

③ · ④ (현행 제1항 및 제2항과 같음)

제5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재생에너지 총발전량 중
국·공영시설의 발전량이 차지하는 비율의 목표

4. ~ 10.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제6조의2(지역 기본계획 및 지역연차별 실행계획) 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는 제5조제1항의 기본계획을 실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 기본계

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지역 기본계획의 계획기간은 10년 이상으로 하며, 지역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 및 기간

2. 재생에너지 자립의 추진방법과 생산·이용·보급의 목표

3.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및 지원방안

4. 직전 지역 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5. 그 밖에 지역 기본계획의 목표달성을 위하여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조례로 인정하는 사항

③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에서 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지역 실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④ 시·도지사는 지역 기본계획과 지역 연차별 실행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이행한다.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생략)

<신설>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조성된 사업비를 다음 각 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2. (생략)

<신설>

제7조(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등에 관한 계획의 사전협의)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제1항의 국가기관 등은 아래 각 호에 대하여 미리 해당 지역의 주민, 시민단체 등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의 대상과 절차는 대통령령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해당 지역에 발전시설을 설치·운영함에 따른 자연환경과 생활환경에 미치는 변화에 관한 사항

2. 재생에너지 자립을 위해 필요한 설비와 조건, 환경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 시민단체 등과의 협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과 조례가 정하는 사항

제10조(조성된 사업비의 사용) --

-----.

1.·2. (현행과 같음)

3. 재생에너지 공영화

4. ~ 16. (생략)

<신설>

4. ~ 16. (현행과 같음)

제11조의2(재생에너지 발전의 공공 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법률이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3호의 기준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100분의 3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임원 임명권한 행사 등을 통하여 해당 기관의 정책 결정에 사실상 지배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기관이 재생에너지 사업 공영화를 추진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시·군

2.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른 지방공사, 같은 법 제76조에 따른

<신 설>

지방공단

3. 도 및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립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출연 기관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시·군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위하여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기관을 새롭게 설립하려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의2(자연력 활용 부담금)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연력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대하여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부담금은 재생에너지 판매대금의 10퍼센트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의 부담금을 지역 기후대응기금에 적립하고,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신 설>

1. 지역재생에너지 자립에 필요한 사업

2. 지역재생에너지 복지 관련 사업

3.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정의로운 전환 사업 지원

④ 제1항의 부담금의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는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3조부터 제5조까지에 따른다.

제12조의3(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의 공영화)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5조제2항제3호의2의 재생에너지 공영화 목표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허기간이 만료된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수용하여 제11조의2제2항 각 호의 기관으로 하여금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가 특허 조건을 위반한 경우 또는 재생에너지 발전 여건이 현저히 변화되어 특허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유로서

<신 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다만, 이 경우에는 특히 유지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명절차를 거쳐야 한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공영화할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제12조의4(정의로운 전환 이행 의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석탄화력발전소 또는 원자력발전소 등 신·재생에너지 이외의 발전사업의 종료 또는 감축으로 이에 종사하는 노동자(「근로기준법」 제2조의 근로자 및 외형에 관계없이 노무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의 노무제공관계가 종료될 경우 공공재생에너지 발전사업에 우선 고용하여야 한다. 이에 필요한 구체적인 기준, 대상, 절차

제24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생략)

<신설>

3. (생략)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노무제공관계가 전환되는 노동자의 노동조건은 종전의 노무제공관계의 수준보다 낮아져서는 아니된다.

③ 노무제공관계의 전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재취업을 위한 교육, 생활보조금 지급, 생활근거지 이전에 따른 비용 보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4조(청문) -----

-.

1. (현행과 같음)

2.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특허의 취소 또는 변경

3. (현행과 같음)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

-----시·도지사-----
-----.

<u>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위임할 수 있다.</u>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	-------------------